

재해경감활동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공급자 관리 연구

Supplier Management Research for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and Prevention of Major Disasters

김상덕*

Kim, Sang-Duk

요약

본 연구는 발주기관과 사내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성 강화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공급자 전략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공급자의 적용사례를 검토 분석하여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도출한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의 요구사항인 공급자 전략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발주기관과 공급자가 적용하는 절차와 그 절차에 의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공유하는 표준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였다. 공급자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수립 절차중 중요한 절차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내용과 절차를 기업재난관리표준과 관련 규범에 반영할 것을 제시한다.

Keywords : 기업재난관리표준, 공급자 전략, 사내 상주 공급자, 핵심업무, 위험요인, 교육훈련계획, 공급자 계약서, 공급자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발주자와 공급자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연계

1. 서론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정하고 있는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사내에 상주하는 공급자를 두고 종합플랜트설비를 운영하는 발주기관의 핵심업무와 공급자의 계약서상의 주요업무의 연계성과 발주기관의 핵심업무와 공급자의 핵심업무 그리고 각 기업의 핵심업무 선정과 위험평가 절차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공급자를 포괄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의무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부터는 최고경영자의 공급자와 관련된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었으므로 재해경감활동과 연계한 활동 강화를 통한 중대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본론

본 연구를 통하여 공급자와 연계성이 강화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 개선안을 제안하고 기존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공급선을 다변화’하거나 ‘계약조건으로 공급자 자체적 연속성확보를 요구’하는 공급자 연속성확보전략과는 달리, 발주기관의 사례를 통하여 업무연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가 있는 사업장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과 적합성 확보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의무로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관리상의 조치사항을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와 연계하여 문서화하고 소명 증빙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재해경감 활동정책(전술적 레벨, 아웃소싱 활동 관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품 서비스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아웃소싱으로 위탁되더라도 연속성에 대한 책임까지 아웃소싱 제공업체로 가지 않는다. 즉 제품과 서비스의 전달책임은 끝까지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이는 아웃소싱 업체로 전가될 수 없다.’는 취지와 증처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급자 관리에 대한 책임 조항은 맥을 같이

* 정회원 · 사)한국기업재난관리사회 회장 kimsd623@gmail.com

하고 있으며 연계성 분석을 통한 중처법에서 요구하는 중대재해예방체계를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의 보완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3. 결론

기업재난관리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공급자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반 규범과 전략유형을 분석하고, 공급자에게 위탁된 주요 업무와 공급자 연속성확보에 관한 계약조건과 발주기관의 핵심업무와 공급자에게 위탁된 업무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공급자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20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무부 등 (202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 기업재난관리표준

김상덕, 김창수 (2021) 사내 공급자와 연계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 구축방법 개선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지, 17(2), pp.365-374